

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하였음을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4월 22일

진도군수



1.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

지구명	위 치	지정 내용			지정사유	비 고
		유형	등급	면적(m ²)		
해창지구	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남동리 848 ~ 포산리 2433	침수위험지구	가	106.51	하천범람에 의한 침수위험	
염대지구	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칠전리 2153-13~포산리 2657	침수위험지구	가	80.64	하천범람에 의한 침수위험	

2. 지정기간 :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12조 제5항에 따른 지정 해제시 까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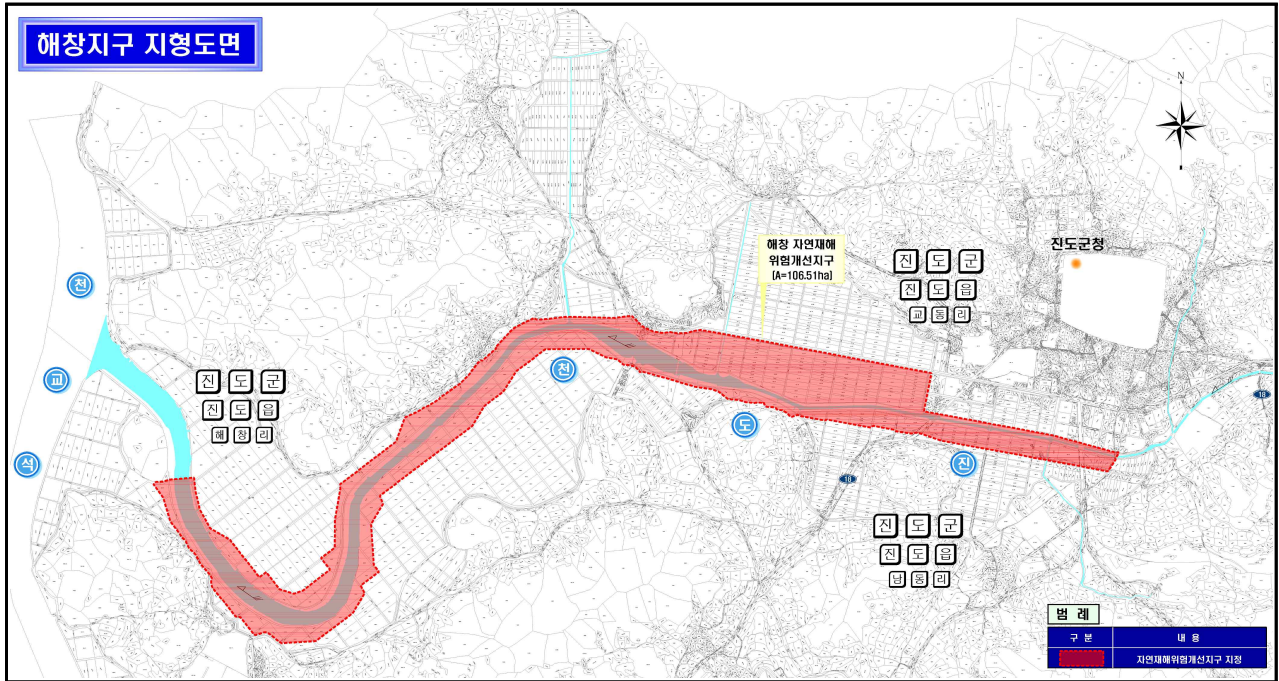
3. 열람장소 및 문의사항 : 진도군 건설교통과 자연재난팀(061-540-3486)

붙 임 :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도면 1부

<붙임1> 해창지구

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도면

□ 지형도면



□ 현황사진(유역도, 침수지역 현황도 등)



